

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
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730호, **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'26년 5월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5년 결산에 따라 「예치금」 이 당초 2,230백만원에서 7,292백만원으로 5,061백만원 증가하여, 2026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 또한 5,061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'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' 집행잔액(3,449백만원),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(1,626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(6백만원) ※ 이자수입 감소(20백만원)

[2026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4,202	9,263	5,061	120.5
세 외 수 입	168	168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168	168	-	-
이 자 수 입	168	168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4,033	9,095	5,061	125.5
보 전 수 입 등	3,553	8,615	5,061	142.4
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323	1,323	-	-
예 치 금 회 수	2,230	7,292	5,061	226.9
내 부 거 래	480	480	-	-
예 탁 금 이 자 수 입	480	480	-	-

[2026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 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4,202	9,263	5,061	120.5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3,380	3,380	-	-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3,380	3,380	-	-
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2,720	2,720	-	-
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세주택 지원사업	460	460	-	-
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사업	200	2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807	5,868	5,061	627.5
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807	5,868	5,061	627.5
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807	5,868	5,061	627.5
기 타	15	15	-	-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15	15	-	-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15	15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Ⅲ. 검토의견¹⁾

- 동 제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50억 6,1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**여유자금예치**를 50억 6,1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지출계획의 경우,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은 당초 지출계획(8억 700만원)보다 627.5%, 50억 6,1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○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① (생략)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장애인단체의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7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
9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